

##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가 개선됩니다.

- ① 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공동주택이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 ② 공동인수 가능한 담보의 범위도 화재로 인한 손해 외, 풍수재·건물붕괴·배관누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9.13일)에서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 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하였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이다.

이는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 상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21년 도입되었다.

\* 일정한 면적 이상의 국공유 건물, 학교, 도매시장, 백화점, 공장, **16층 이상 아파트** 등

### < 화재보험법에 따른 의무보험인 특약부화재보험 >

- (개요)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건물의 인명·재산 손실을 예방하고 적절한 보상을 위해 1973년 도입된 **의무보험**
- (내용)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대인·대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
  - ① (자기건물손해) 보험에 가입한 건물이 화재로 인해 입은 손해
  - ② (대인배상) 화재사고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
  - ③ (대물배상) 화재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

제도 도입 이후 ①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공동주택\*도 특수건물처럼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②화재로 인한 손해로 한정되어 있는 담보범위를 건물붕괴 등 화재 외 손해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아파트(15층 이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에 금융위·금감원, 손해보험 업계는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상호협정 개정을 추진하였다.

첫째,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 외 공동주택(15층 이하 아파트 등) 소유자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공동인수가 가능한 담보의 범위를 화재로 인한 손해 외에도 풍수해, 건물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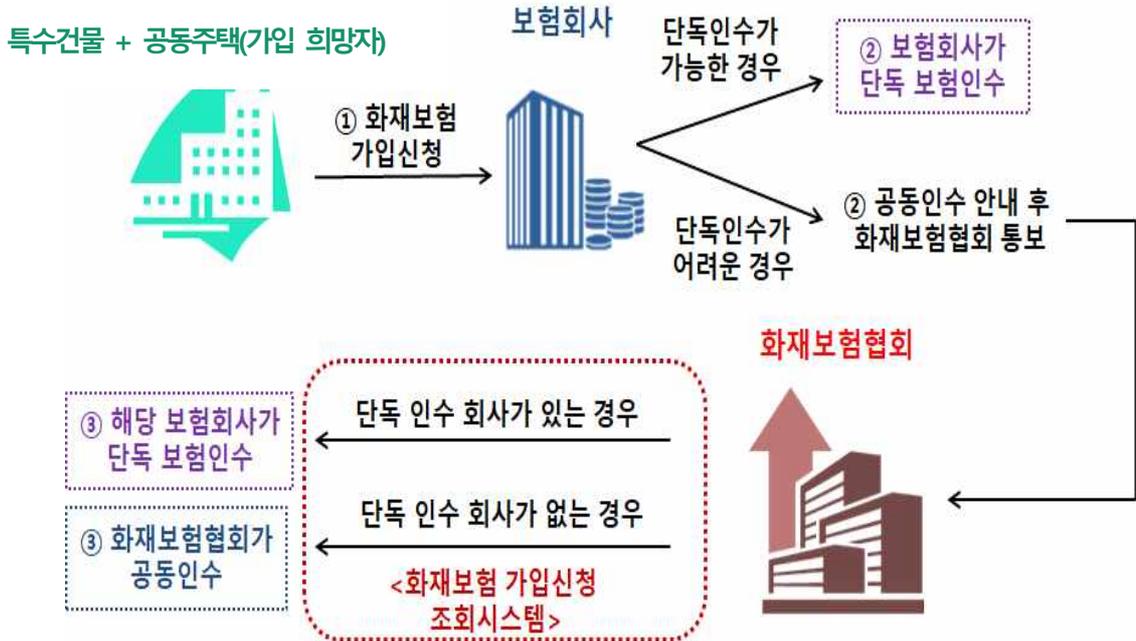
< 공동인수 제도 개선내용 >

구분	현행	개선
대상건물	특수건물	특수건물 및 공동주택
담보범위	화재로인한 손해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 전체

금번 제도개선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이 용이해지고, 위험보장 범위가 화재 외 다양한 재난·사고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이 인명·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보험과	책임자	과 장	신상훈 (02-2100-2960)
		담당자	사무관	박성진 (02-2100-2967)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책임자	국 장	문형진 (02-3145-7460)
		담당자	팀 장	황기현 (02-3145-7466)
	화재보험협회	책임자	경영지원본부장	김동규 (02-3780-0203)
		담당자	기획홍보실장	사공람 (02-3780-0211)

# 참고1 화재보험 공동인수 절차



**1. 상호협정 개요**

□ 협정체결회사 : 11개 손해보험회사\* 및 화재보험협회

\*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MG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하나손보, 농협손보

□ 협정체결일자 : 2021.1.27.(금융위원회 인가)

□ 주요내용 : 손해보험회사 및 화재보험협회가 특수건물 및 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에 대한 공동인수 업무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

**2. 주요 개정내용**

**① 인수 대상 및 계약내용 변경**

구분	개정前	개정後
인수 대상	특수건물로서 손해보험회사가 특약부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원하는 건물 및 기계장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및 각 건물에 부속된 기계장치, 가재도구 등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보험목적물
계약 내용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 계약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약부 화재보험(단,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 및 동조제2항에 따른 풍수재·건물 붕괴 특약 등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특약

**② 상호협정 명칭 변경**

- 인수 대상건물 추가에 따라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에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으로 변경

### 참고3

##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

종류	상세요건
국유건물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공유건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병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관광숙박업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방송사	「방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대규모 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중이용업소	다음 각 목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아파트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고층건물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다만, 「화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아파트는 제외)
목욕탕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영화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도시철도역사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역사 및 역 시설
실내사격장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참고4****화재보험협회 및 보험회사 연락처**

구분	연락처
화재보험협회	www.kfpa.or.kr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전화 : 02-3780-0200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www.meritzfire.com 주소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 (역삼동) 전화 : 1566-7711
한화손해보험(주)	www.hwgeneralins.com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여의도동) 전화 : 1566-8000
롯데손해보험(주)	www.lotteins.co.kr 주소 : 서울시 중구 소월로3 (남창동) 전화 : 1588-3344
MG손해보험(주)	www.mggeneralins.co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35 (역삼동) 전화 : 1588-5959
흥국화재해상보험(주)	www.heungkukfire.co.kr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신문로1가) 전화 : 1688-1688
삼성화재해상보험(주)	www.samsungfire.com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서초동) 전화 : 1588-5114
현대해상화재보험(주)	www.hi.co.kr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63 (세종로) 전화 : 1588-5656
(주)KB손해보험	www.kbinsure.co.kr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역삼동) 전화 : 1544-0114
DB손해보험(주)	www.idbins.co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대치동) 전화 : 1588-0100
하나손해보험(주)	www.educar.co.kr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7 (인의동) 전화 : 1566-3000
신한EZ손해보험(주)	www.shinhanez.co.kr 주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13 (다동) 전화 : 1544-2580
NH농협손해보험(주)	www.nhfire.co.kr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60 (미근동) 전화 : 1644-9000